

검사기준 제·개정(2008년 상반기)

1.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

- ▣ 해양수산부령 제402호, 2008. 1. 31 제정
 -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대상 선박 변경
 -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(최대승선인원 16인 미만 부선 제외)
 -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6인 이상인 선박(어선의 경우 2008.1.31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)
 - 중간검사 시기 조정
 - 다음의 선박은 한번의 제1종중간검사만 받는 것으로 변경
 - 총톤수 50톤 미만 유조선
 -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외의 선박
 - AFS 협약 수용
 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함
 - 상태평가 검사 대상선박 및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을 정함

2. 강화검사등에 관한 기준

- 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23호, '08. 2. 15 제정
 - 목적
 -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 따른 유조선·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(액화가스산적운송선 제외)에 대한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
 - 적용대상 선박
 - 유조선·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(액화가스산적운송선 제외)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

선박 중 선령이 5년 이상이고 총톤수가 300톤 이상인 선박

- 검사의 범위
 - 선종별로 동 기준 별표 1에 따로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의 검사에 적용
- 검사의 시기
 - 정기검사,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 시 실시. 다만,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2007. 11. 23 시행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
- 검사의 집행방법
 - 강화검사는 검사관등에 의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검사시기 및 선종별 검사범위에 따라 시행
-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
 - 검사원은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을 위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확인 시행
- 두께측정
 - 두께측정은 두께측정업자에 의하여 시행
 - 강화검사를 위한 두께측정 방법은 동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
- 국제협약의 적용
 -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(IMO)가 채택한 검사강화제도(ESP)의 기준에 따름

3.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

- 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191호, '08. 5. 26 제정
 - 기름여과장치, 분뇨처리장치 등에 대하여 국제협약의 개정 기준을 반영